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모두의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('23.1.27)

보도 일시	2023. 3. 23.(목) 즉시보도			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	책임자	과 장	이용일 (044-205-3731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우 (044-205-3738)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	책임자	과 장	정유근 (02-2100-4161)
		담당자	서기관	김수정 (02-2100-4166)

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

-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「지방보조금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□ 앞으로 **지방자치단체**의 **지방보조금의 교부·집행·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**되고, **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**도 더욱 **강화**된다.

○ **행정안전부**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「**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**개정안**이 **3월 23일(목) 국회 본회의**에서 **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**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**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**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**에 **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**한 바 있다.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지방보조금	15.7조원	17.0조원	18.5조원	18.4조원	20.2조원

□ **개정안**의 **주요 내용**은 ▲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·운영, ▲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, ▲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.

○ 먼저,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**'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(이하 보탬e,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)'의 구축과 운영** 등에 대한 **법적 근거가 마련**된다.

○ **보탬e**는 2023년 1월에 시·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·군·구로 확대되고, **2024년 1월**에는 **전면 개통**될 예정이다.

□ **보탬e**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**국민**(개인·단체) **혹은 법인**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, **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확인, 정산 보고 등을 수행**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.

○ 아울러,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**공시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**할 수 있게 되어 **지방보조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될**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특히,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가 **지방자치단체장**과 **지방보조사업자** 모두에게 부여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**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**하고, **지방보조사업자**에게는 교부신청서, 정산보고서 등 **지방보조금 관리정보**의 **공시의무**를 부여한다.

□ 또한, **지방자치단체**는 가족관계 등록사항, **사업자등록정보, 과세정보** 등과 **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 확인**이 **가능**하고, **실시간 집행상황**을 **점검**할 수 있게 된다.

○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.

□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**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**을 **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**도 **대폭 정비**된다.

○ 현재 지방보조사업자, 지방보조금수령자만 수행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**부정계약업체까지** 수행배제 대상을 확대한다.

□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**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 등**에게도 **벌칙**이 (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) **적용**된다.

□ **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**은 **“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이 통과됨에 따라**, 앞으로 **지방자치단체**와 **지속적으로 협력**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**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**”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**지방보조금 개요**

□ 지방보조금 개요

※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○ **(개념) 지방자치단체**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,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**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**하거나 **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**

※ 출자금·출연금,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

<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금 개념·규모('22년 당초예산 기준) >

국고보조사업	지방보조사업
국고보조금(약 102.2조) ※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적용	순지방비(약 20.2조)
대응지방비(약 36.4조)	

⇨「지방보조금법」상 **"지방보조금"**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**"순지방비"**와 **국고보조사업** 관련 **"대응지방비"**를 **포괄**

□ 지방보조금 관련 주요개념 및 예시

○ **(지방보조사업자)**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

※ (지방보조사업)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

○ **(지방보조금수령자)**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

예시 **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** :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·연계 지원

지방자치단체	(교부)	지방보조사업자	(지급)	지방보조금수령자
·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·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· 수행점검 및 사후관리	⇨	**자원봉사센터(법인)** · 지방보조사업 수행 · 실적보고서 제출	⇨	**자원봉사자(개인)** · 인건비 수령

○ **(부정계약업체)**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·낙찰·체결·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

예시 **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** : 산단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 실내공간정보 및 SW 구축을 지원

지방자치단체	(교부)	지방보조사업자	(재화용역) ⇆ (자출)	부정계약업체
·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·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· 수행점검 및 사후관리	⇨	중소·중견기업		· 온라인 플랫폼 설계·개발 · 시설·장비 임차 및 용역 수행

참고2 **지방보조금법 주요 개정내용**

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· 운영 〉

○ **(시스템 운영자) 행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** 통합관리망을 **구축·운영*** 하고,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**지방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**하도록 규정

* 통합관리망의 운영, 정보처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

○ **(금융·신용정보 제공 요청)**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자격확인,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**정보제공** 및 **금융·신용정보 제공**을 **요청**하고 정보를 **제공받아 처리** 가능

○ **(시스템 연계) 다른 시스템**에서 **지방보조금을 집행**한 내역이 있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**통합관리망과 연계**

○ **(예치·지급)** 지방보조금의 **부정수급 방지**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**예치 후 지급**할 수 있도록 규정

※ (기존) 先 교부·집행, 後 정산 → (개선) 先 증빙, 後 교부·집행

<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·운영 구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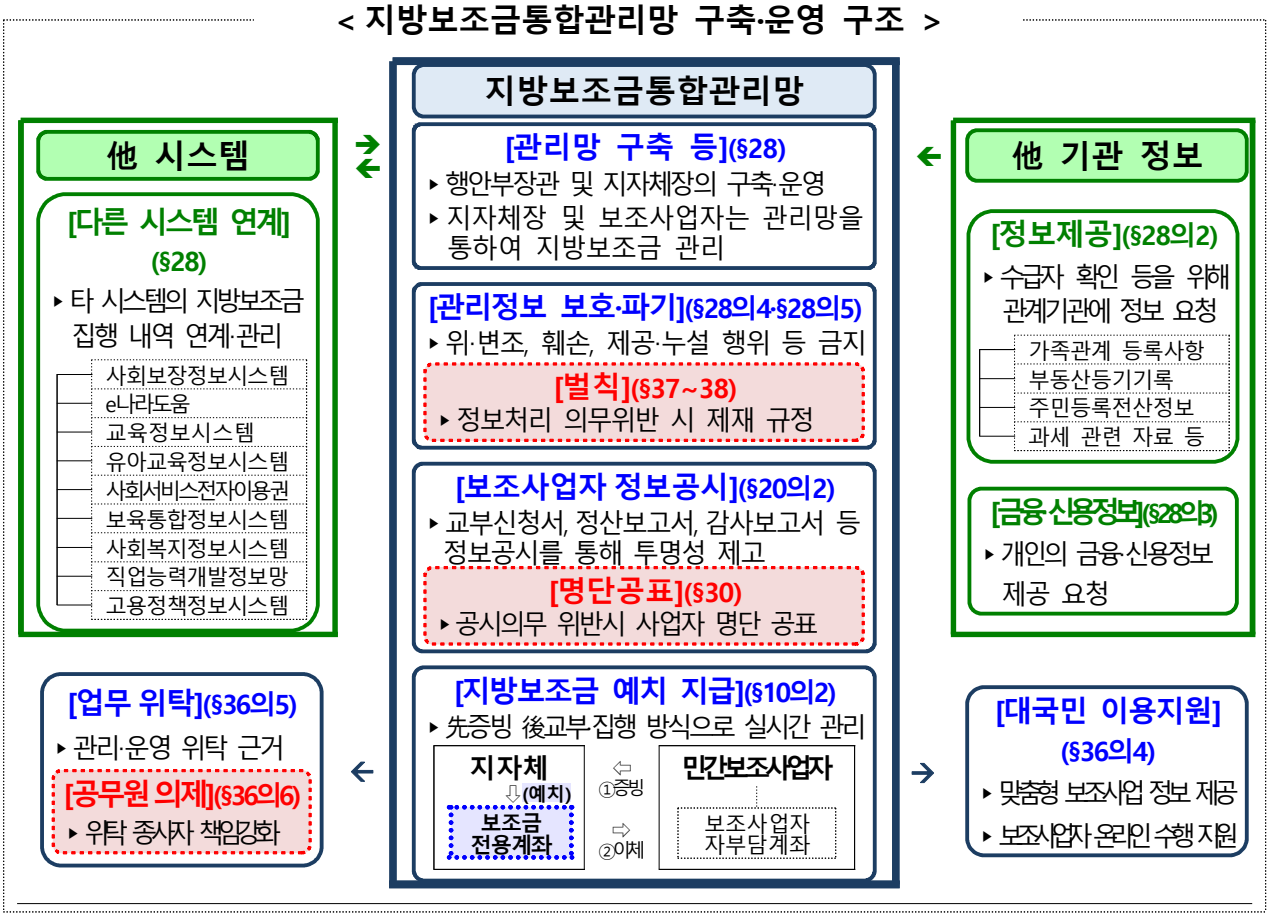

〈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〉

○ **(수행배제) 부정수급** 보조사업자,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**수행배제 범위***·**기간**(5년 이내) 규정 및 **수행배제 대상 확대****

*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배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

** (현행) 지방보조사업자, 지방보조금수령자 → (개선) 부정계약업체 추가

○ **(통지의무)** 지자체(광역)가 다른 지자체(기초)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통합관리망을 통한 **지방보조금 예산안** 및 **예산 통지의무** 부여

○ **(정산검증) 보조금법**에 따른 **정산보고서 검증 시 검증을 받은 것**으로 **간주***하고, **제출 지연** 시 지연 기간에 따라 **지방보조금**을 **삭감**(50% 이내)할 수 있도록 규정

※ (현황)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(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) 검증, 회계감사(10억원 이상) 의무 부여

* 현재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, 지방보조금이 모두 포함된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부담 발생

○ **(공시의무)**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**중요재산**에 대하여 **공시의무** 부여

〈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〉

○ **(부정수급 관리) 부정**하게 지방보조금을 **지급받은 자**, 그 사실을 알면서 **지급한 자**에 대한 **벌칙**(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 규정*

* (현행)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,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
→ (개선)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,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
○ **(정보보호)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 의무 위반*** 시 **벌칙** 규정

* 위조·변경·훼손,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 등

○ **(위탁자 처벌)** 통합관리망 **업무를 위탁**받은 임직원에 대해 「**형법**」 제129조~제132조(수뢰, 뇌물제공 등에 대한 제재) 적용 시 **공무원으로 의제**

참고3 **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(보탬-e) 개통에 따라 달라지는 점**

□ 보조금 집행의 시스템화

* **현행** ①사업자 선정(수기로 자격 확인) → ②보조금 지급 → ③사업수행 → **④수기 정산**

⇨ **개선** ①사업자 선정(**시스템으로 자격 확인**) → ②**보조금 예치**(지자체 계좌) → ③사업수행 + **지급요청** → ④**시스템**(국세청·카드사 연계)에서 **검증** → ⑤**보조금 지급**(지자체 계좌→사업자)

※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도입으로 정산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, 집행과정에서 지출건별로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사전 관리함으로써 사후 정산이 용이하게 되는 것임

□ '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

※ (단계별 개통) 보조금 예산편성('22.8월), 집행·사업관리('23.1월 시도, '23.7월 시·군·구), 부정수급 탐지 등('24.1월)

구 분	현 행		개 선
공 모	▵ 지자체 홈페이지 선정 공고 - 해당 지자체 지방보조사업 공모 내용만 검색 가능		▵ **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**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- 모든 지방보조사업 공모 내용 검색 가능
사업 신청	▵ 지자체 직접 방문 신청		▵ 방문없이 지원신청서 **온라인 제출**
보조사업 선정	▵ 공문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		▵ **진행상황**을 언제든 **확인 가능**
보조금 교부 신청	▵ 지자체 직접 방문 신청	➡	▵ 방문없이 교부신청서 **온라인 제출**
보조금 교부 결정	▵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		▵ **진행상황을** 언제든 **확인 가능**
보조금 교 부	▵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에 지급		▵ **교부금액 확인**(예치 계좌) - 보조금 목적 외의 오·유용 사용 원천 방지
보조사업 수 행	▵ 수기로 지출 증빙 작성		▵ 세금계산서, 보조금카드와 **연계된 지출내역 시스템 자동 등록** - **실집행 기반 관리** 및 **자동 정산, 문제사업 확인** 등
보조사업 정 산	▵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		▵ 실적보고서 등 **온라인 작성**